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8년도 제27차 회의

1. 일 자 2008년 12월 24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재)

이 승 일 위 원 (부총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김대식 위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헌 위 원

4. 결석위원 없음

5. 참 여 자 남 상 덕 감 사 윤 한 근 부총재보

김 병 화 부총재보 이 주 열 부총재보

송 창 헌 부총재보 이 광 주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장 병 화 정책기획국장 정 희 전 금융시장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이 상 배 금융통화위원회실장

민 성 기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61호 — 2009년 1/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변경〉

(1) 의장이「한국은행법」제28조 및「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61호 - 「2009년 1/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변경」을 상정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최근의 총액대출한도 소진 정도 및 은행의 대출태도 강화 움직임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총액대출한도를 증액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2009년 1/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2008년 4/4분기와 동일한 9조원으로 설정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다른 위원들이 모두 이에 동의하였음

(3) 심의 결과

의결문 작성 · 가결

의결사항

2009년 1/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9.0조원으로 정한다.

<의안 제62호 — 「2009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안)〉

(1) 담당 부총재보는 정부가 국회에서 2009년도 기채한도 의결을 받아 당행 앞으로 2009년도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한도를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2009년중 당행이 정부에 대하여 신규로 대출할 금액의 최고한도와 상환기한, 이 율 및 기타 조건을 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09년도 한국은행의 정부에 대한 일시대출금 한도와 대출조건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2009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또는 2009년 1월호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의 주요활동-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참조)

〈의안 제64호 —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취급규정」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수출금융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중소기업 발행 수출환어음으로 제한되어 있는 당행의 수출금융 지원대상을 2009 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국내기업 발행 수출환어음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수출 환어음 담보대출 취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취급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취급규정」개정(안)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또는 2009년 1월호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의 주요활동-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참조)